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 : 한준호·김남국·김민철

김병주 · 신현영 · 오영환

이용우 • 이원택 • 임오경

임호선 · 장철민 · 주철현

최혜영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0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정보보호산업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저리"를 "저금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자금융자) ① 과학기술정	제20조(자금융자) ①
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	
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	
는 정보보호기업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금을 장기 <u>저리</u> 로 융자	<u>저금리</u>
(정보보호기업이 금융기관으로	
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	
는 그 이자와 과학기술정보통	
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의 차	
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.	
이하 같다)할 수 있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